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53
----------	------

2021년 4월 29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 1. 제안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 12. 3.)·시행(2020. 12. 4.)됨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제1항)
-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다.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라.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 마. 존속기한(안 제15조): 시행일부터 5년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53호로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법」의 제정(2019.12.3.) 및 시행(2020.12.4.)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입니다.
- 이러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법」 제31조<sup>1)</sup>에서 규정

1)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하고 있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sup>2)</sup> 및 시설투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1년도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예정교부 및 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예시(안)을 안내한바 있습니다(교육부 교육시설과-11809).
- 현재 교육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sup>3)</sup>에 따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 하는 ‘그린스마트스쿨’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5조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그러나 시설환경 개선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각종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예산이 교부<sup>4)</sup>될 예정에 있어 해당 사업비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2) 「교육시설법」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7.14.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실행계획-그린스마트 스쿨-’,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2021.3.), 2쪽

□ `21년 예산 규모

○ 전체 사업대상 2,835동 중 1차년도 물량 761동에 대한 예산 배정

※ 40년 경과한 노후시설 200만㎡ 사업 추진 시 761동 개선 예상됨

- (재정사업) `21년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국비 9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402억원은 시도별 지방비 매칭

※ 총사업비 기준 국고보조율은 30%

**[표-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예산안**

2021년 총 사업비			기확보(E)	부족액 (F=C-E)
지방비(A)	국비(B)	총액(C=A+B)		
422	167	589	26	563

※ '21년 그린스마트스쿨 예산교부액 589억원[지방(70%) 422억원 : 국고(30%) 167억원]

- 동 기금조례안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먼저 안 제1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와 조성, 그리고 기금의 용도와 관리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5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부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시(안)’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구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금의 구성에 관한 의견(안 제3조)

-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sup>5)</sup>에 따른 재원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동 기금이 적립·운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마치 동 재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으로 받은 금원인 출연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출연’이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20.7.)」에서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재원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동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기금 조성재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5)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 따라서 동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인용된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명확한 법적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의견(안 제15조)

○ 동 조례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5년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이하 ‘지방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연한을 초과하지 않아 법률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바, 지방기금법에서는 이러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기금법」 제4조제1항 단서).

○ 더욱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기간 만료시 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동 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53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재원이 이동하는 전입금을 의미하나, 안 제3조제1항에서 인용된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은 동 기금의 조성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또한 동 기금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써 법적근거가 사라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 2. 주요내용

- 동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인용된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성재원을 각 호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안 제15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u> 2. <u>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3. <u>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u> 4. <u>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5. <u>그 밖의 수입금</u>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

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